

의안번호	2205985
의 퇴 인	이개호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.
추계번호	24C525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2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3,400만원(연평균 1억 7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요양보호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(안 제31조의15제4항)	178	-	178	-	178	534	10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의15(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1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,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, 요양보호사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1조의15(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2항·제3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가 「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,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1조의15(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4항	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1조의15(요양 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1항	×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1조의15(요양 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2항·제3항	×	
3	안 제31조의15(요양 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제4항	○	○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, 인권 및 복지 증진, 지위 향상,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하여 재정사업을 실시하고,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장기요양기관(시설기관·재가기관)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개별 기관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데, 이때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침
 - － 현행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에 근거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123호)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시설 및 제공 급여별로 49.8%부터 61.1% 수준까지 차등하여 설정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목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가 지급받는 평균 인건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,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, 양출제입(量出制入)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수입 증가가 수반되며, 이에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8조¹⁾에 따른 국가부담금이 증가하게 됨
 - 한편,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,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가 설정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을 알 수 없고, 이에 따라 발생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액 규모 등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여 안 제31조의15 제1항~제3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다만, 안 제31조의15제4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개정안 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양보호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,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2년 주기로 조사·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58조(국가의 부담)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.
(후략)

-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소요된 재정(1억 7,800만원)을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보수 등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보건복지부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라 3년 주기로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
 - 본 추계서는 요양보호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최근 사회복지사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소요된 재정이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－ 추계기간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요양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를 2년 주기로 조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 3,400만원(연평균 1억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요양복지사 보수·지급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요양보호사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조사(안 제31조의15제4항)	178	－	178	－	178	534	10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